#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1573
○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○ 제 출 일 : 2020년 5월 25일
○ 회 부 일 : 2020년 5월 29일

## 2. 제안이유

○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 및 제31조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다. 기 타
1) 입법예고('20. 2. 27.~3. 18.) 결과: 의견없음.

## 5.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변경 등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개정(시행 2020.1.1., 법률 제16855호, 2019.12.31., 일부개정)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※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「지방세법」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지역자원시설세 목적(제141조(목적)) 사항 중 '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'이라는 법문을 삭제한 것으로,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세외수입(사용료·원인자부담금 등)으로 충당되고 있어 이 부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사문화된 세목의 목적사항을 삭제하였으나,

본 조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목적 조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,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등 법령 개정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에 개정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음.

**<관련 지방세법 신·구조문 대비표>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·해저자원·관광자원·수자원·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**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**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. |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. |

※ 1954년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등의 관련 비용 충당 목적으로 공동시설세가 도입(임의세, 조례 위임)되었으나 '오물처리시설등'에 대하여는 사용료·원인자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.

○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체계 정비 관련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(제142조(과세대상))을 살펴보면,

① 세목 구분 상 종전 '특정부동산분'(건축물, 선박, 토지)을 과세대상에서 토지를 삭제하고 명칭을 '소방분'으로 변경하여 종전과 같은 소방사무 소요 비용 충당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,

② 종전 '특정자원분'을 과세대상에 따라 '특정자원분'과 '특정시설분'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, 설치 목적을 '지역개발사업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'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.

**< 지방세법 개정 내용 >**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개정 전</th><th colspan="3">개정 후</th></tr>
<tr><th>세분류</th><th>과세대상</th><th>목적</th><th>세분류</th><th>과세대상</th><th>목적</th></tr>
<tr><td>특정<br>부동산분</td><td>건축물, 선박</td><td rowspan="2">①소방재원<br>②자원보호·개발,<br>③환경개선,<br>④지역균형개발</td><td rowspan="2">소방분</td><td>건축물, 선박</td><td rowspan="2">소방사무</td></tr>
<tr><td>토지</td><td>※ 토지 삭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특정<br>자원분</td><td rowspan="2">발전용수, 지하수,<br>지하자원, 컨테이너,<br>원전, 화전</td><td rowspan="2">①지역자원<br>보호·보전<br>②주민생활<br>환경 개선<br>③지역개발</td><td>특정<br>자원분</td><td>발전용수, 지하수,<br>지하자원</td></tr>
<tr><td>특정<br>시설분</td><td>컨테이너,<br>원전, 화전</td></tr>
</table>

※ ①특정부동산분의 명칭을 '소방분'으로 변경, ②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·시설분 구분, ③특정자원분·시설분의 목적을 '지역개발'과 '주민생활환경개선'으로 조정

〈관련 지방세법 신·구조문 대비표〉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----------.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2. 지하수<br>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<br>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<br>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 | |
| 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| |
| 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 | <삭 제> |
| 5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 | <삭 제> |
| 6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 | <삭 제> |
| <신 설> |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<br>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<br>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 |

○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구분 개정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‘소방분’(건축물, 선박)과 지역 자원의 사용·수익에 대하여 세원을 포착하는 특정자원분(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) 및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원을 포착하는 특정시설분(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)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출처: 「지방세법」〔법률 제16855호, 2019.12.31., 일부개정〕 개정 이유 중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「지방세법」 중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구분 명칭과 조문 체계 변경 등 개정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의 법령 인용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15조는 발전용수, 안 제17조는 지하수, 제19조제1항은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조항으로 인용 법조항을 개정(법 제146조제4항 → 법 제146조제5항)하려는 것이며,

○ 안 제21조는 '특정시설분'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라 컨테이너에 대한 세율(법 제146조제4항 → 법 제146조제5항) 및 표준세율에 대한 인용 법조항(같은 조 제1항제4호 → 같은 조 제2항제1호)을 반영하려는 것이고,

○ 안 제23조는 원자력발전, 안 제24조는 화력발전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으로 '특정시설분'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따라 인용 법조항(법 제146조제1항제5호 → 법 제146조제2항제2호 / 법 제146조제1항제6호 → 법 제146조제2항제3호)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지역자원시설세 '특정부동산'이 '소방분'으로 개정됨에 따라, 본 조례 제7절 제목(제7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→ 제7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)과, 안 제25조의 세율 인용 법조항(법 제146조제4항 → 법 제146조제5항) 및 명칭(특정부동산 → 소방분)과 표준세율 인용 법조항(같은 조 제2항→제3항)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31조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 지역에 관한 규정으로 「지방세법」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조문 및 명칭 등 법 개정 사항(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특정부동산 →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)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 〈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〉

| 현 행 | 개 정 안<br>(2021.1.1. 시행) | 비고(지방세법)<br>(2021.1.1. 시행) |
|---|---|---|
| **제15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| **제15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5항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-. 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<br>2. 지하수<br>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<br>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<br>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<br>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<br>4. 삭제 〈2019. 12. 31.〉<br>5. 삭제 〈2019. 12. 31.〉<br>6. 삭제 〈2019. 12. 31.〉<br>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<br>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<br>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 3원<br>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br>1.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<br>2.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유흥장,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<br>2의2. 대형마트, 복합상영관(제2호에 따른 극 |
| **제17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| **제17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5항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. | |
| **제19조(세율)**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| **제19조(세율)** ① 법 제146조제5항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|
| **제21조(세율)**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| **제21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5항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 제2항제1호———— ————. | |
| **제23조(신고 및 납부)**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| **제23조(신고 및 납부)** 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. | |

| 현 행 | 개 정 안<br>(2021.1.1. 시행) | 비고(지방세법)<br>(2021.1.1. 시행) |
|---|---|---|
| **제24조(신고 및 납부)**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| **제24조(신고 및 납부)** ───<br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<br>── 법 제146조제2항제3호<br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<br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<br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<br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<br>────────. | 장은 제외한다), 백화점, 호텔,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.<br>3. 삭제 <2019. 12. 31.><br>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<br>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<br>[시행일 : 2021. 1. 1.] |
| **제7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** | **제7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** | |
| **제25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| **제25조(세율)** 법 제146조제5항<br>── 소방분 ───<br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<br>- 제3항──────<br>-. | |
| **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**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. | **제31조(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)**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·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. | |
| | 부 칙<br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8장제7절의 제목, | 부 칙<br><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><br>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|

| 현 행 | 개 정 안<br>(2021.1.1. 시행) | 비고(지방세법)<br>(2021.1.1. 시행) |
|---|---|---|
| | 제25조,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부터 시행한다.<br>2. 제128조제3항 · 제4항,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,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: 2021년 1월 1일 |

○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체계 정비(법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) 등 개정 사항에 대한 시행일을 2021.1.1.로 규정(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)함에 따라, 본 개정조례안(제15조, 제17조, 제19조제1항, 제21조, 제23조, 제24조, 제8장제7절의 제목, 제25조, 제31조)에 대한 시행일도 부칙으로 근거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.

○ 한편, 「지방세법」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(제146조 제1항부터 제3항)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%의 범위에서 가감(같은 조 제5항)할 수 있도록 규정(원자력발전, 화력발전 제외) 하고 있으나,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표준세율을 유지하고 법 인용 조항만 개정하고 있는바, 향후 목적세로서의 재원 마련 취지에 부응하는 적정 세율에 대하여 재무국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한 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○ 또한, 지역자원시설세는 「지방세법」상 목적세인바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 쓰여야 하나, 현행 특정부동산분(개정안 "소방분") 세입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도, 특정자원분(개정안 "특정자원분", "특정시설분")은 그대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어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바, 본 세목의 세입 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## 〈최근 5년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실적〉

( 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특정부동산분**<br>(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) | 2,510 | 2,591 | 2,694 | 2,887 | 2,891 |
| **특정자원분**<br>(일반회계) | 3.32 | 3.58 | 4.68 | 4.26 | 2.04 |

**「지방세기본법」**

제7조(지방세의 세목)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.

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득세 2. 등록면허세 3. 레저세 4. 담배소비세 5. 지방소비세 6. 주민세 7. 지방소득세 8. 재산세 9. 자동차세

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자원시설세 2. 지방교육세

**「지방재정법」**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…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**「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」**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「지방세법」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액
2.「지방교부세법」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
3.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, 과징금, 이행강제금
4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5. 국고보조금

| 전 문 위 원 | 김 태 한 | 입법조사관 | 최 석 훈 |
|---|---|---|---|

**참 고 자 료**

## 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「지방세법」 신·구조문대비표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·해저자원·관광자원·수자원·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. |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. |
| 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,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지하자원,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·화력발전(이하 이 장에서 “특정자원”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<br>2.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, 선박 및 토지(이하 이 장에서 “특정부동산”이라 한다) | 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.<br>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<br>가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발전용수”라 한다)<br>나.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지하수”라 한다)<br>다.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지하자원”이라 한다)<br>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<br>가.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컨테이너”라 한다)<br>나.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원자력발전”이라 한다)<br>다.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화력발전”이라 한다)<br>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|
| 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발전용수: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(양수발전은 제외한다)을 하는 자<br>2. 지하수: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·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(採水)하는 자<br>3. 지하자원: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<br>4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·출항시키는 | 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<br>가. 발전용수: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(양수발전은 제외한다)을 하는 자<br>나. 지하수: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(採水)하는 자<br>다. 지하자원: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<br>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자<br>5. 원자력발전: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<br>6. 화력발전: 석탄·석유·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<br>7. 특정부동산: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| 가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·출항시키는 자<br>나. 원자력발전: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<br>다. 화력발전: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<br>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|
| 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.<br>1. 특정자원<br>가. 발전용수: 발전소의 소재지<br>나. 지하수: 채수공(採水孔)의 소재지<br>다. 지하자원: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. 다만,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.<br>라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<br>마. 원자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<br>바. 화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<br>2. 특정부동산<br>가. 건축물: 건축물의 소재지<br>나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<br>다. 토지: 토지의 소재지 | 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<br>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<br>가. 발전용수: 발전소의 소재지<br>나. 지하수: 채수공(採水孔)의 소재지<br>다. 지하자원: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. 다만,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.<br>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<br>가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<br>나. 원자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<br>다. 화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<br>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<br>가. 건축물: 건축물의 소재지<br>나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 |
| 제145조(비과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 제145조(비과세) ① ----------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----------. |
|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| 1. ---------- 경우 |
|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| 2. ---------- 경우 |
|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(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)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 ② ----------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----------. |
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 | <삭 제> |
| 5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 | <삭 제> |
| 6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 3원 | <삭 제> |
| <신 설> |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| | 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 |
| | 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 |
| | 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0. 3원 |
|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| ③ 소방분----------. |
| 1.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선박(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 | 1. 건축물 또는 선박의----------. |
| 2.·2의2. (생 략) | 2.·2의2. (현행과 같음) |
| 3.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. 3으로 한다. | <삭 제> |
| ③ 제2항의 토지,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,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 |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----------. ----------. |
|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| ⑤ ----------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 | 따른----------. ------제2항제2호 및 제3호----------. |
| 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 | 제147조(부과·징수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----------. |
| 1.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다만,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 | 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----------. ----------. |
| 2.·3. (생 략) | 2.·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, 제115조 및 제122조(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 | ② 소방분----------. |
|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 | ③ 소방분----------. |
|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,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. | ④ 소방분----------건축물 또는 선박으로----------. |
|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 | <삭 제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| |
| ⑥·⑦ (생 략) | ⑥·⑦ (현행과 같음) |
| ⑧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. | <삭 제> |